

제2820호
2021. 4. 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25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제2021-25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25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등 재난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대하고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
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

나.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 임의·조례위원회인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의무설치 위원회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 통합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 ysyu@junggu.seoul.kr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 3) 전 화 : 02-3396-5042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258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u></p> <p>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p>
<p><u>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 4. (생략)</p> <p><u><신 설></u></p>	<p><u>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u>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u>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p>	<p><u><삭 제></u></p>

<p>위원 중에서 호산하며, 위원은 해당 전문가,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 <u>의 경우 특정 상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p><삭 제></p>
<p>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삭 제></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25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소상공인 저리 용자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제정 및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금 관련 공무원의 소속 행정기구명 변경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 법률명 변경

나. 기금의 용도

- 저리 용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이자차액보전(이자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계공무원

- 위원장, 기금운용관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 hrlee0526@junggu.seoul.kr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 3) 전 화 : 02-3396-5043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2021-259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에 대한 이차지원
2.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제6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경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은 **전통시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1.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제14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p>1.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에 대한 이자지 원</p> <p>2.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경제친화국장-----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전통시장과 장-----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